

# 행정자치부 주의요구

제 목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가점 적용 등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

내 용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제31조의6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하되,

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자격증이 있거나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이나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 또는 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으며,

가점 및 감점 평정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점수

를 가산점으로 평정하며,

①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해당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 평정을 할 수 없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의 해당 자격증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③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④ 별표 3 제1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

같은 규칙 제24조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sup>5)</sup>에 따른 점수 이내에서 가산점으로 평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전산직렬-정보처리 등 기술사·기사 / 사회복지직렬-사회복지사 / 간호직렬-조산사,간호사)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① 특수지 특지·갑지에서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25점

② 특수지 을지에서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18점

③ 특수지 병지에서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13점

따라서 경상남도에서는 자격증 제한으로 채용된 관련자들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시 자격증 가점을 부여해서는 아니되며, 특수지 해당기관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등급별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상남도에서는 전산직렬, 사회복지직렬, 간호직렬 채용시 자격증 제한으로 채용된 지방○○○○○ ○○○ 등 4명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시 자격증 가점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였으며

지방○○○○○○○ ○○○에 대해서는 특수지 병지(○○○○○○소) 근무 경력을 인정하여 특수지 가산점을 부여하였으나 가산점을 잘못 부여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2015년, 2016년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수가 일부 변경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수 변경현황

직급	성명	당초					변경	비고 (명부서열)	비고
		총 평정점수	근무 성적	경력	실적 가산점	가산점 (자격증 등)	총 평정점수		
지방○○○○ ○○○	○○○	89.24	61.50	27.36	0.03	0.35 특수지	89.02 특수지(0.13)	4위 (변경없음)	2015년 상반기
지방○○○○ ○○○	○○○	98.25	67.75	30.00	-	0.50 간호사	97.75	1위 (변경없음)	2016년 상반기
지방○○○○ ○	○○○	72.17	57.75	13.92	-	0.50 간호사	71.67	1위 (변경없음)	”
지방○○○○ ○○○○	○○○	93.58	63.08	30.00	-	0.50 사회복지사	93.08	2위 (변경없음)	”
지방○○○○ ○	○○○	93.25	62.75	30.00	-	0.50 정보처리기사	92.75	5위 (변경없음)	”

※ 자료 :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지사는

앞으로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직렬에 임용된 경우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수지 가점을 잘못 부여하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